

토론 요지

수도권 규제완화의 정책평가와 상생협력 방안

이 창 호 | 국회 입법조사관

- 현행 수도권 규제는 1982년 12월 31일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음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환경보전권역의 3개 권역별로 차별화된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
- 수도권 규제의 대상인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전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 범위가 확정되었음
 - 2008년 말 기준으로 수도권의 면적은 11,750km²로서 국토면적의 11.8%인데 반해, 수도권 인구수는 24,746천 명으로 전국 인구 50,394천 명의 49.1%에 해당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임
 - 지역별 백화점 매출액 및 대형소매점 매출액도 2010년 말 기준으로 수도권에 각각 69.14%, 60.99%가 집중되어 있음
- 이러한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인프라 확충 속도를 초과하는 수준까지 지속됨에 따라 교통난 심화와 환경오염 등 수도권의 삶의 질 저하 문제가 대두되기에 이르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참여 정부 시절이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규제에 대한 완화정책이 일부 있었음
- 참여 정부 시에는 다음과 같은 규제완화가 있었음
 - 자연보전권역 택지규제방식 전환: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14조제1항제2호 개정(2006.4)
 - 대학구조개혁 지원 등을 위한 규제 개선: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11조제1호, 제12조제1항제1호,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24조제1항제3호 개정(2006.11)

-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탄력성 강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22조제2항 개정(2004.4)
- 주한미군이전 및 미군공여 지역 등에 대한 수도권 규제완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15조 및 제17조 신설(2006.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 제26조 신설(2004.12)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규제완화가 있었음
 - 공장설립 등의 행위규제 완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3조제2호 및 제5조제1호 개정(2009.1)
 - 공공법인의 행위규제 완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11조제2호, 제12조제2호 및 제14조제1항제5호 개정(2009.1)
 - 자연보전권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제1항제7호 개정(2009.1)
 - 연구소 등에 대한 과밀부담금 감면: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17조제5호 개정(2009.1)
 - 수도권 권역의 일부조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별표1 개정(2009.1)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정책은 기존의 수도권집중 억제정책을 통한 지방발전이라는 양적 균형으로부터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선회하는 등 일부 내용상의 변화가 있었으나, 큰 정책적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현재 차명진의원 등 44인이 2009년 9월 발의한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임
 - 동 제정안은 기존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여 각종 수도권 규제를 없애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이에, 대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국회의원들은 동 법률의 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발생함
-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경제침체, 세계 대도시권 간 경쟁우위 선점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해 온 것은 사실임
 - 일본: 공장 등 제한법 폐지(2002년), 공업재배치촉진법 폐지(2006년)
 - 영국: 공장건축허가제 및 업무용건물 신축허가제 완전 폐지(1981년)
 - 프랑스: 과밀부담금 대상에서 공장제외(1982년)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지역 간 이해관계로 객관적인 입장을 넘어서는 쟁점사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비수도권의 반발을 고려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의 절차 등을 통해 신중히 검토할 사안으로 보임
- 현 단계에서는 수도권 규제의 강화 또는 완화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쇠퇴한 지역을 개별 프로젝트를 통해 문제 해결식으로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계획 틀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2010년 말 현재 우리나라 중앙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 활성화(도시 재생,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개별 사업 내역은 <표 1>과 같음
- 지방 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개별 사업을 도시 전체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계획 틀에서 연계하는 방안(영국의 경우)을 마련하거나, 일본처럼 「(가칭)도시재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표 1> 부처별 개별 사업 내역

주관부처	사 업 명	주관부처	사 업 명
국토해양부 (6)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문화체육관광부(15)	일상장소 문화공간화 기획, 컨설팅 지원사업
	주택재개발사업		BTL 방식에 의한 학교복합시설 8개 시범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생활 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재정비촉진사업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
	유통단지 진입도로 지원 사업		폐선 등 유휴자원 활용
행정안전부 (7)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문예회관 건립
	안전도시 만들기		문화시설건립지원사업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		공립박물관, 미술관 건립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
	친환경 자전거 도로망 구축		지방체육시설 지원사업
	비영리단체지원사업		함께 누리 지원사업
농림수산 식품부(1)	도시숲 조성관리		주민생활권 공공체육시설 확충
			마을단위 체육시설 지원
교육과학 기술부(1)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사업		국민체육센터 확충
중소기업청 (4)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환경부(5)	생태하천 복원 사업
	재래시장 시장경영혁신사업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재래시장 시장정비사업		지방의제21 시범사업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		환경친화적 자전거 마을
보건복지 가족부(3)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친환경 안심놀이터개선사업 추진	
	드림 스타트 사업	노동부(1)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	
	지역아동센터	여성부(1)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 사업	